###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246 제출연월일: 2007.10.29

제 출 자:대전광역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번 호

「도서관법」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정함(안 제3조).

나.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정함(안 제4조).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서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2007. 7. 27~8. 18 / 접수의견 없음

###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제3조(회의) ①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- 제5조(관계기관 등 협조)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6조(수당 및 여비)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운영규정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관계법령

- 제24조 (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) ①시·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(이하 "지방도서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  - 2.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 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  -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·주재한다.
  -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7년 11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

### │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7년 10월 30일

3. 상 정 일 자: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(정례회)

제1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11. 23)
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## || 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국장 정하윤)

### 1. 제안이유

「도서관법」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정함 (안 제3조).
- 나.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정함 (안 제4조).

### III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이희배)

#### ○ 본 제정 조례 안은

「도서관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「도서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밭도서관장이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정되어 있고, 한밭도서관이 대전광역시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므로,

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포함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### IV. **토 론 요 지** : 생 략

V. **질의답변요지** : 생 략

VI. **심 사 결 과** : 수정가결

VII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

##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 246

제안연월일: 2007. 12.

제 안 자: 행정자치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간사를 대표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함(안 제19조의3).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중 "도서관업무 담당사무관"을 "대표도서관업무 담당과장 "으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제4조(간사)	제 정 안	수 정 안
	제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도서관업</u>	제4조(간사) <u>대표도서관</u>